

긴급입찰 공고 사유서

□ 개요

- 용역명: 2022년 PIS펀드 운용성과 평가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예정금액: 금3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목적

- PIS펀드의 운용성과가 펀드의 목적 및 원칙에 부합되는지 평가하여 수익자협의회에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집합투자업자에 성과달성을 제고 방안을 요청하기 위함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6호, 2022.7.1.)에 따라 조속한 용역 추진 필요
- 과업성과품 제출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

□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이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